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232호, 2021. 6. 8. 공포, 12. 9. 시행)됨에 따라,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8조의2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)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.

제94조의12를 제94조의14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94조의12) 중 “제94조의11”을 “제94조의13”으로, “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국민참여단”으로 하며, 제94조의12 및 제94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4조의12(국민참여단 구성) ① 법 제74조의19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단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만19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국민참여인을 위촉한다.

② 국민참여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③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참여인이 될 수 없다.

④ 국민참여인은 국민참여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시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국민참여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
2. 국민참여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하는 행위
3. 국민참여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
4. 그 밖에 국민참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

⑤ 국민참여인은 대상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.

1. 국민참여인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2. 국민참여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
3. 국민참여인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
⑥ 국민참여인이 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위원장은 그 국민참여인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4조의13(국민참여단 운영 등) ① 국민참여 심사대상은 등록 신청인이 국민참여 심사를 희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중에서 등록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전항의 심사를 위하여 국민참여단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국민참여인을 지정하고, 이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국민참여인은 대상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. 다만, 제출된 의견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기속하지 아니한다.

③ 전항의 심사에 참여한 국민참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88조의2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)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<u>제88조의2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)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.</u> <u>제94조의12(국민참여단 구성) ①</u> <u>법 제74조의19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단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만19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국민참여인을 위촉한다.</u> <u>② 국민참여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③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참여인이 될 수 없다.</u> <u>④ 국민참여인은 국민참여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시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1. 국민참여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</u>

손하는 행위

2. 국민참여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하는 행위

3. 국민참여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

4. 그 밖에 국민참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

⑤ 국민참여인은 대상 안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.

1. 국민참여인 또는 그와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국민참여인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

3. 국민참여인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
⑥ 국민참여인이 제4항 및 제5

<신 설>

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
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
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위원장
은 그 국민참여인을 해촉할 수
있다.

제94조의13(국민참여단 운영 등)

① 국민참여 심사대상은 등록
신청인이 국민참여 심사를 희망
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안건 중에서 등록 신청
인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한
다.

② 위원장은 전항의 심사를 위
하여 국민참여단 중에서 5인 이
상 9인 이내의 국민참여인을 지
정하고, 이에 따라 심사에 참여
한 국민참여인은 대상 안건에
대한 의견을 보훈심사위원회에
제출한다. 다만, 제출된 의견은
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기속
하지 아니한다.

③ 전항의 심사에 참여한 국민
참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
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
있다.

제94조의12(운영세칙) 제94조의5 제94조의14(운영세칙) -----

부터 <u>제94조의11</u>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, <u>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</u>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--- <u>제94조의13</u>----- ----- <u>분과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국</u> <u>민참여단</u>----- ----- -----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516 (044) 202 - 5431